★ ◎ 본부장 방침 제653호

문서번호	택지설계팀-2706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5.11.27
공개여부	공개

파트장	택지설계팀장	택지사업처장	택지사업본부장	
한인철	황의필	김소겸	11/27 정현규	
협조				

서울시 감사처분(현지시정) 조치결과 보고

서울특별시 SH공사

(택지사업처 택지설계팀)

서울시 감사처분(현지시정) 조치결과 보고

2015.8.27.~9.23까지 실시한 「SH공사 건설 및 시설사업 특정감사」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통보되었는 바, 그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인 “팔각정자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 선정 부적정”(기술감사팀-2165, 2015.11.10.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합니다.

Ⅰ 관련 업무내용 및 규정

- 서울시 SH공사 건설 및 시설사업 특정감사 처분사항(현지시정)통보
  - 기술감사팀-2165(2015.11.10.)
-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요령(2009)
-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 선정위원회 운영안내(실장방침 70호, 2011.3.4.)

Ⅱ 감사 지적사항

-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설계용역시 팔각정자를 선정하면서 안건발생에 따른 기본계획(방침)을 득하지 않았고
- 시장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함

안건발생	➡	위원회 개최통보	➡	위원회개최	➡	결과보고 및 계약심사
• 기본방침 - 필요성, 시장조사 - 위원회구성		•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송부		• 회의록작성 • 심의사항 결정		• 기관장보고 • 발주부서 →계약심사과

[그림 1] 특정제품 선정 운영절차도

Ⅲ 조치내용

-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안건 발생시 **기본계획(방침)을 수립**하여 설치장소에 제품 구매가 타당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
- 유사제품 특성이나 장단점 파악 등 면밀히 시장조사를 거친 후 특정제품을 선정

Ⅳ 기대효과

- 기본계획(방침) 수립으로 불요불급한 특정제품선정 차단
- 설치장소별 제품구매 타당성 검토로 공간별 특화 가능
- 유사제품 특성과 장단점 파악 등으로 제품선정에 질적 향상기대
- 공정하고 투명한 제품선정으로 우리공사 이미지 제고

Ⅴ 행정사항

- 본 보고서 방침 후 우리공사 기술감사팀에 제출

붙임 1. 관련공문(현지시정 통보)
2. 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구성요령
3.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선정위원회 운영안내. 끝.